

## [지원금액]

### □ 지원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차지원(3%이내)이 지원내용입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잔액 1억원, 이차율 1%일 경우

지원금액:  $50,000,000\text{원} \times 1\% \div 2(6\text{개월}) = 25\text{만원을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이차율 4%일 경우

지원금액:  $50,000,000\text{원} \times 3\% \div 2(6\text{개월}) = 75\text{만원을 지원}$

- 대출잔액 4천5백만원, 이차율 4%일 경우

지원금액:  $45,000,000\text{원} \times 3\% \div 2(6\text{개월}) = 67\text{만5천원을 지원}$

- 대출잔액 4천5백만원, 이차율 1%일 경우

지원금액:  $45,000,000\text{원} \times 1\% \div 2(6\text{개월}) = 22.5\text{만원을 지원}$

※ 변동금리일 경우 반기 평균 이율을 산출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프로 이내 분을 지급

### □ 이차 지원금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 반기(1~6월 또는 7~12월)에 납부하신 대출이자 합산금액(원금제외한 이차만) 75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 합산금액이 75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지원금액인 75만원이 지급됩니다. 합산금액이 75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기간 이차 지급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 [지원기준]

전용면적이 85m<sup>2</sup>이하인데 소수점도 상관이 없나요?

○ 전용면적 85.99m<sup>2</sup>까지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분양권에 관한 계약서와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로 이자를 납부한 내역 등 지원기준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반기마다 신청 절차는 동일한가요?

○ 반기마다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절차는 동일합니다.

자녀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미성년 자녀인 경우 가구원에 포함되며, 임신 중인 경우에도 병원 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자녀로 인정됩니다.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등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내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면 외국인이여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는 초혼만 가능한가요?

○ 초혼, 재혼 모두 가능합니다.

2023년 하반기(7~12월)분 이자납부한 내역에 대해서 2024년 상반기 공고일 전에 대출금액 전액상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신청서류의 대출잔액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공고일 이전에 대출 상환을 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용도]

###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주택구입 목적자금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택 구입 시 공동명의로 된 경우 상관이 없나요?

- 주택명의를 공동명의로도 상관이 없으나, 주택계약자 및 대출실행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경남도내이면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대상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주택계약자 및 대출실행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주택계약자 및 대출실행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어떤 것인가요?

- 공부상(공적인 장부-건축물대장 등) 주택용도가 아닌 경우(지하실, 대피소, 옥탑방 등)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원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 통장사본의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되나요?

- 신청자 본인은 대출실행자, 대출명의자의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은 신청자 본인만 제출하면 되나요?

-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자 본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 할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도 추가 제출해주셔야 됩니다.(예: 직장으로 인해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어떻게 발급 받아야 되나요?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 되므로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자의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기준으로 1부, 배우자의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기준으로 1부 이렇게 총 2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 부모님이 이혼 하였을 경우 형제, 자매가 나오는 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를 전국기준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 미과세증명서는 무엇인가요?

- 미과세증명서는 과세한 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주택분 재산세가 없다는 걸 증빙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모두 제출해야되는 서류입니다.
  - ※ 시·군·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인터넷 발급분 불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을 발급해주셔야 됩니다.(공고문 예시 참고)  
※ 시·군·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인터넷 발급분 불가)

**건축물대장의 경우 전유부만 제출해도 되나요?**

- 집합건축물일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제출입니다.

**주택매입계약서는 원본만 있는데 사본 제출해도 되나요?**

- 주택매입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입니다.

**주택매입계약서의 경우 매매계약서만 해당되나요?**

- 분양권에 관한 계약서도 해당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납입증명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모두 금융기관에 요청하시고, 대출납입증명 서류의 경우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발급가능한 서류를 은행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고, 주택금융공사의 경우는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납입증명서류는 모두 금융기관 날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연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연소득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공고일 기준 부부의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중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022년 귀속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근로하였으나 전년도 소득이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소득증빙자료와 함께 당해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득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를 담당공무원이 추가제출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대표이며 월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 법인의 대표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제출 해주셔야 종합소득이 확인 가능하므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용도]**

**□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주택구입 목적자금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등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내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이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